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경호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4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03. 18.

다. 회 부 일 : 2025. 0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한편,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9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현행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 대상에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추가하여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고(제7조제3항), 대통령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대통령경호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10조제3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임용권자) ① · ② (생략)	제7조(임용권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u>국가수사본부장</u> ,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③ ----- ----- ----- ----- ----- ----- ----- <u>-대통령경호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u> ----- ----- -----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0조(신규채용)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
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
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
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8.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규채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생 략)	9. 「<u>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대통령경호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되어 온 경호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국빈 등의 경호, 대통령 관저 및 국가중요시설 경비, 대통령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 경호라는 본래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최근 몇 년간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는 경호업무 수행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중립적 법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민주적 통제와 법

치주의 원칙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행정부 수반에 대한 경호는 권력기관이 아닌 일반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제도를 운용 중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경호업무의 경찰청 이관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국가원수 경호의 특수성, 정보의 보안성, 경호 연속성 보장의 중요성, 그리고 기존 경호처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손실 우려임을 감안하였을 때, 경호 공백 발생 가능성, 경찰청 내 경호조직의 위상 및 독립성 확보 방안, 정보보안체계 구축, 전문인력 유지 및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장과 동일한 직급임. 경호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경호본부가 경찰청 내에서 어떤 지위와 독립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개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9)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경호처의 폐지 여부는 경호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호업무 수행기구를 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 대상인 '국가수사본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설치할 경우, 경호업무의 통솔 범위, 하부 조직 구성, 인력 규모, 국가원수 경호의 특수성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44